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호
2.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 등 13명
3. 발의일자 : 2018. 7. 2.
4. 회부일자 : 2018. 7. 13.

## II . 제안이유

- 석면은 잠복기가 길고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각종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어 석면사용이 많았던 1990년대 이전에 건축된 대부분의 학교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III . 주요내용

1. 학교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시설을 규정함(안 제4조).
2. 학교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3. 학교석면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4. 석면 해체·제거 공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5.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6.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정보관리, 홍보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7.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용역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서윤기 의원 등 13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호로 발의되어 2018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의 석면건축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그리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석면은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섬유모양의 화성암으로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등 건축물의 내외장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석면이 폐에 흡입될 경우 폐암 등의 악성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지면서, 정부는 2007년 7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2009년부터 석면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 이후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전체 1,954개 학교에 대해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사용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sup>1)</sup>

1) ‘2013년도 학교 석면 조사결과 보고’

-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학교 중 석면 건축 자재를 사용한 학교는 전체의 80%인 1,566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10개교는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표-1] 2013년 서울시내 학교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실태 조사 결과<sup>2)</sup>**

조사 학교수 (교)	학교수(교)				계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		무석면		
		비율		비율	
1,954	1,566	80%	388	20%	1,954

-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까지 총 210개교의 석면 제거를 완료하였고, 2027년까지 매년 약 4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407개교의 석면을 모두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sup>3)</sup>.

가. 기간 : 2013.8~2014.2.28.

나. 조사학교 대상

구분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등	계
전체 학교수	869	597	382	318	29	14	2,209(100%)
제외 대상교	178	35	22	20	0	0	255(11.5%)
조사 학교수	691	562	360	298	29	14	1,954(88.5%)

- 제외대상: 2009년 이후 착공신고 학교, 친환경건축물, 병설유치원(초등학교에 포함하여 조사), 휴·폐원 유치원

다. 조사방법

- 교육청 조사(1,851교) : 교육청 일괄 석면조사기관 의뢰(2012년 서울시 '학교석면 컨설팅 사업'으로 조사한 초등학교 100개교 포함)

- 학교 자체 조사(103교) : 학교 개별적으로 석면조사기관 의뢰(국립 및 재정결함 미지원 대상학교, 자체조사 완료교)

2) '2013년도 학교 석면 조사결과 보고',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7848,(2014.4.30.)

3) '학교석면 제거공사 안전관리 방안 확보', 제28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p.328

## [표-2] 석면 제거 현황

(2017. 12. 31. 나이스 보고자료 기준)

학교급	학교수	학교수(교)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						무석면***	
		석면건축물 해당*	석면건축물 제외**	소계	비율	석면 제거	비율	무석면	비율
유	874	387	81	468	53.5%	81	17.3%	406	46.5%
초	601	456	61	517	86.0%	61	11.8%	84	14.0%
중	383	297	32	329	85.9%	32	9.7%	54	14.1%
고	320	245	31	276	86.3%	31	11.2%	44	13.8%
기타	46	22	5	27	58.7%	5	18.5%	19	41.3%
계	2,224	1,407	210	1,617	72.7%	210	13.0%	607	27.3%

\* 석면건축물 해당: 2017.12.31. 기준 석면건축물

\*\* 석면건축물 제외: 2014년 전수조사 시 석면건축물이나 2017.12.31. 기준 무석면 건축물

\*\*\* 무석면건축물: 2014년 전수조사 시부터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

○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내 석면의 완전한 제거는 2027년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학교내 석면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sup>4)</sup> 학교 석면 제거 및 관리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석면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학교내 석면 자재의 실태조사와 함께 석면의 해체·제거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안전한 석면 관리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방학 중 석면제거, 개학 후 대청소한 초등학교서 석면 재검출'(연합뉴스, 2018.5.23), '석면 검출, 서울 인헌초, 사상 첫 개학 연기사태'(서울신문, 2018.2.24), '석면 잔재물 검출된 서울 덕수초 임시방학 결정'(이데일리, 2018.3.28),

##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적용범위의 총칙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따른 일정 및 조치 사항,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역할, 석면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교육, 연구용역 및 위탁 관련 사항 등의 본칙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석면안전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적용범위에 관한 의견(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동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서울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5)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동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서울시교육청이 지도·감독하는 학교로 규정한 것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안 제4조에서 인용한 「유아교육법」 제7조는 유치원의 설립

---

5)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주체에 대한 구분을 규정한 것인바, 안 제4조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의 정의에 대한 규정<sup>6)</sup>을 인용하는 것이 보다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sup>7)</sup>.

### 3)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안 제5조)

- 안 제5조는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등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정부가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5조제1항), 시·도지사는 매년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6조제1항).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후환경본부를 총괄로 매년 ‘석면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의 석면 건축물의 경우에도 동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서울시 추진계획은 서울시내 학교 등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석면관리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학교 내 석면건축물에 대한 효과적 관리 측면과 관할청의 책무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안 제5조와 같이 교육청이 시청과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도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석면관리와 관련해서 시행계획이 시청과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업무 추진과정에서 양 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6)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7) 「학교석면관리 매뉴얼(4차개정)」, 교육부, p.3.  
- 적용범위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초·중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

됩니다.

#### 4)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안 제9조)

- 안 제9조는 학교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과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8)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석면자재를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법 및 교육부 지침9)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위해성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학교의 석면이력을 관리하며,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시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공사의 감시·감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10).

---

8) 「석면안전관리법」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 「학교석면관리 매뉴얼(4차개정)」, 교육부, p.11.

##### 가. 학교장

- 1)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석면자재 유지·관리 및 학교 내 적절한 석면관리 대책 마련
- 2) 석면 비산우려를 고려한 개·보수 등 적극적 안전대비책 강구
- 3) 학교 구성원 대상 석면안전관리 교육 실시
- 4)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신고방법 : NEIS)

10)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 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이하 생략).

○ 또한 석면의 해체·제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sup>11)</sup>와 교육부 지침<sup>12)</sup>에 따라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안 제9조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는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는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학교석면관리 매뉴얼(4차개정)」, 교육부, p.12.

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1) 6개월마다 학교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석면비산 가능성 등의 조사(위해성 평가) 및 적절한 조치
- 2)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시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 제공 및 공사 감시·감독
-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내 석면이력 관리
- 4) 학교 홈페이지, 교내 방송, 가정통신문등을 통한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등) 대상 석면함유 건축자재 분포 및 위해성 등급 등 공지·홍보
- 5) 최초 지정 및 변경(최초 지정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시 1년 이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이수(6시간)  
⇒ 교육 이수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보수교육(4시간) 이수 권고

11)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12) 「학교석면관리 매뉴얼(4차개정)」, 교육부, p.44.

다. 손상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 1) 교체 대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면적이 50㎡(예: 텍스 1장 면적을 0.18㎡로 가정할 경우 약 278장) 이상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철거 및 교체 작업 실시

○ 한편, 안 제9조제5항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공사 시작 전에 공사작업자에게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4조<sup>13)</sup>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으로서, 공사시행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8의2<sup>14)</sup>에 따른 교육을 정기·비정기적으로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sup>15)</sup>

- 그러나 공사작업자에 대해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시켜야 하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6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을 뿐, 별도 자격요건

---

1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해체 또는 제거작업 등과 관련된 교육

14) 「석면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석면안전보건법 시행규칙」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38.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교육부, p.12.

2.3.5 설비 해체·제거

- 설비 해체·제거작업 전 해당 근로자는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실시하는 석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이미 공사시행 사업주로부터 법률에 따라 정기·비정기적으로 석면 해체 및 제거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는 공사 근로자에게 석면 비전문가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중복하여 교육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생각되며,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교육시설안전과-6988).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 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97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 (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자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횟수 및 시간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비용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5. 29.] [대통령령 제28897호, 2018. 5. 21., 일부개정]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